

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개월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업체명	설립 연월일	
	대표자명	전화번호	
	소재지	팩스번호	
	자기자본		
	백만원(외국인 투자비율 %)		
	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		
외		건(총	백만원)
직원 수			
총		명, 그 중 기술인력의 수 ()명, 고급 기술인력의 수 ()명	

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의
한
도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귀하

첨부서류	- 정관 -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[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(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)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]의 사본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-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-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-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	수수료 없음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	-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